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음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”로,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”를 “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

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주사·공업주사·
임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”를 “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
·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
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
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
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
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
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사무관·공업
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”를 “공업사무관·시설
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보훈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21조제1항 단서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
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사무
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”를 “공업사무관·시
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주사·공업주사·
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”를 “공업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행정
주사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”로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)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(5급 2명, 6급 1명, 7급 1명)”을 “7명(4급 2명, 5급 3명, 6급 2명)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4명(6급)”을 “6명(4급 2명, 6급)”으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별표 4, 별표 5, 별표 6, 별표 7, 별표 9, 별표 10, 별표 11, 별표 12, 별표 13, 별표 14, 별표 15, 별표 17, 별표 18 및 별표 19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대변인) ① (생 략)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, 홍보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 ③ · ④ (생 략)	제2조(대변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----.
제4조(기획조정실장) ① (생 략)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·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며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 ③ ~ ⑥ (생 략)	제4조(기획조정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.
제5조(보훈단체협력관) ① (생 략)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 각 1명을 두며,	제5조(보훈단체협력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

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· ④ (생략)

제6조(감사담당관)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7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8조(보훈정책실) ① ~ ⑤ (생략)

⑥ 보훈정책실에 보훈정책총괄과 · 국제협력과 · 보훈문화정책과 · 보훈문화콘텐츠과 · 기념사업과 · 현충시설정책과 · 현충시설관리과 · 예우정책과 · 국립묘지정책과 · 보훈기록관리과 및 공훈심사과를 두며, 보훈정책총괄과장 · 국제협력과장 · 보훈문화정책과장 · 보훈문화콘텐츠과장 · 기념사업과장 · 현충시설정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감사담당관) 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제7조(운영지원과) 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제8조(보훈정책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책과장·현충시설관리과장·예
우정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
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
술서기관으로, 보존기록관리과
장 및 공훈심사과장은 부이사관
·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학
예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⑦ ~ ⑰ (생략)

제9조(보상정책국) ① (생략)

② 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·
등록관리과 및 심사기준과를 두
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
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
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0조(복지증진국) ① ~ ③ (생
략)

④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·
복지서비스과·보훈의료정책과
및 생활안정과를 두며, 각 과장
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
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⑧ (생략)

제11조(제대군인국) ① (생략)

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
또는 서기관으로-----
----- 부이사관
·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
-----.

⑦ ~ ⑰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보상정책국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
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복지증진국) ① ~ ③ (현
행과 같음)

④ -----

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
또는 서기관--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제대군인국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제대군인국에 제대군인정책과·제대군인일자리과 및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③ ~ ⑤ (생략) 제12조(국립대전현충원) ① (생략)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, 각 과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 ③·④ (생략) 제13조(국립4·19민주묘지관리소) 국립4·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제14조(국립3·15민주묘지관리소) 국립3·15민주묘지관리소장은 <u>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 제15조(국립5·18민주묘지관리소) 국립5·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국립대전현충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 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13조(국립4·19민주묘지관리소) ----- 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제14조(국립3·15민주묘지관리소) ----- --- <u>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-----. 제15조(국립5·18민주묘지관리소) ----- 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
---	---

제16조(국립호국원) ① 국립영천호국원장, 국립임실호국원장, 국립이천호국원장, 국립산청호국원장, 국립괴산호국원장 및 국립제주호국원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국립영천호국원, 국립임실호국원,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각각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, 국립영천호국원,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의 각 과장과 국립산청호국원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, 국립산청호국원의 현충과장은 행정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7조(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)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16조(국립호국원) ① -----

----- 과학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.

② -----

----- 공업사무
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
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
로-----
-- 공업주사·임업주사·시설
주사·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) -----

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
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
사무관-----.

제18조(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) ① (생략)

②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행정관리과·전시운영과 및 연구교육과를 두며, 각 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0조(지방보훈청) ① (생략)

② 지방보훈청에 총무과·보훈과·보상과·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며, 총무과장 및 보훈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, 보상과장·복지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21조(보훈지청) ① 보훈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경기남부보훈지청장,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「행정기관

제18조(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지방보훈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-----
----- 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보훈지청) ① 보훈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-----

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② 보훈지청에 두는 과(제대군인지원센터를 포함한다)는 별표 3과 같이 하며, 각 과장 및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·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,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·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·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2조(보훈심사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1과·심사2과·심사3과 및 심사4과를 두며, 심사1과장 및 심사3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
-----.

② -----

----- 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-----

----- 공업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보훈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

술서기관으로, 심사2과장 및 심사4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3조(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「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으며, 별표 5의 정원 중 3명(행정사무관 2명, 행정주사보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)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(5급 2명, 6급 1명, 7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

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

또는 서기관으로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.

--- 10퍼센트-----

② -----
----- 7명(4급 2명, 5급 3명, 6급 2명)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는 정원 중 4명(6급 2명, 7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26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「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3조에서 “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란 제대군인국장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말한다.

②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, 국립4·19민주묘지관리소장 및 국립5·18민주묘지관리소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----- 6명(4급 2명, 6급 --

-----.

<삭 제>